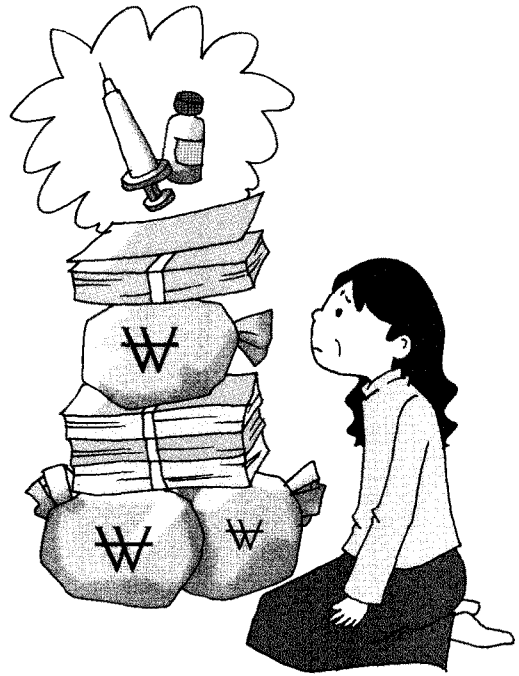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당노인들을 위해



당뇨병은 평생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당뇨병 자체 관리 비용도 들지만 실명, 다리절단, 신부전증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되면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을 키우거나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당뇨병과 관련되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국가적인 혜택 및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당뇨병환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국가지원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지원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혜택과 의료보호 및 의료특례제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서비스 사업이 있다.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로는 민간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의료비 지원, 급식 및 가정도우미 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및 무료 간병인 이용 등이 있다.

국가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혜택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거나 돌봐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아프거나 장애인, 실업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경우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제도이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혜택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권자에게는 생활비, 의료급여 보장까지 되어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적은 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의료보호 및 의료특례제도**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보호 및 의료특례 제도를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의료보호제도는 의료보호 1종과 의료보호 2종으로 나누어진다. 1종 대상자는 입원 및 외래진료비의 전액을 2종은 외래진료비에 한해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입원진료비는 대도시 거주자에게 60%,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80%를 지원해준다. 의료보호 2종이면서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의료보호 1종과 동일하게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특례제도는 저소득가정에서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의료보호특례를 통해 환자만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료비가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당뇨병과 관련된 질병에는 만성신부전증과 심장질환이 선정돼 있다.

신청은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보건소에 신청하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해당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평가하여 적합한 자에 한해 선정된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서비스**

합병증으로 인해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합병증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장애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뇨로 인해 발을 절단할 경우 지체장애(1~6급),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실명될 경

우(1~6급), 만성신부전으로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2급)나 신장이식을 한 경우(5급)에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심장질환(1~3급), 신장이식의 경우(5급)도 해당될 수 있다.

민간차원 사회복지서비스


***민간 사회복지단체의 의료비지원**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원치료비 마련이 힘든 경우에는 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자체의 불우환자후원회 또는 외부지원단체에 지원신청해 치료비를 도움 받을 수 있다.

***급식 및 가정도우미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가정간호서비스 및 무료간병인 이용**

병원에 입원해야 하나 독거노인이거나 생업을 위해 간병해 줄 가족이 없을 경우 관할 구 자활후견기관의 복지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면 평가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도 가정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는 간호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제공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병원의 가정간호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글 / 김민경 기자